

경운대학교 교원담당시수및강사료지급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교원담당시수 및 강사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의 구분) ① 실험, 실습 및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특수강의라 한다.

② 전항 이외의 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.

③ 국내외 저명인사 현장전문가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.

④ 전임교원 책임시수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.

⑤ “삭제”

제3조(책임시수) ①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학칙 제 47조 2항 교과목 분류별 학점당 학습시간을 적용하여 교원 구분별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은 학기별 12학점(연간 24학점)으로 한다.

2. 교육연구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은 학기별 13학점(연간 26학점)으로 한다.

3.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책임학점은 학기별 8학점(연간 16학점) 이내로 한다.

4. 외국인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은 계약 시 따로 정한다.

② “삭제”

③ 책임학점은 대학 및 대학원의 담당 강의 학점을 통산하되, 계절학기 담당 강의학점은 산입하지 않는다.

④ 2인 이상이 공동 강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강의 담당 학점은 $1/n$ (강의자수)로 학점을 인정한다.

⑤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과목구분별 인정학점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.

제4조(책임시수 미달) 전임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학점에 미달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미달학점은 다음 학기의 책임학점에 합산하여 제3조 1항에서 정한 연간 책임학점까지 담당한다.

제5조(책임시수의 일부 면제) ① 보직교원의 책임학점은 처장급 6학점 이상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학점을 감면 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교원이 아닐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책임학점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(강의시간 제한) ① 전임교원의 연간 강의학점은 제3조 1항에서 정한 연간 책임학점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당 12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다.

③ 강사의 강의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당 9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다.

④ 기타 비전임교원(명예교수, 객원교수, 특임교수, 석좌교수 등)은 계약 시 따로 정한다.

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로 학점을 담당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제7조(강사료 지급 기준) 강사료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강의시수 단위는 50분 수업을 1시간으로 한다.
2. 대학 자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하였을 경우, 강사료는 지급하되 반드시 보강을 필하여야 한다.
3. 출장 및 휴강 시에는 강사료를 지급하되, 기 제출한 보강계획서에 따라 반드시 보강을 필하여야 한다.
4. 강사료는 휴강 후 보강을 실시하지 않을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강사료 산출) ① 전임교원의 초과 강사료는 제3조에서 정한 학기별 책임학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학점에 대하여 당해연도 2학기에 4주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. 단, 잔여주수가 4주가 아닐 경우 잔여주수만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0.03.01.>

② 강사의 보수는 학기 중 수업에 대한 강의료와 방학 중 성적처리 및 강의준비를 위한 강의 운영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강사료는 별도로 책정한다.

③ 전임교원의 계약학과 강사료는 제3조 1항에서 정한 연간 책임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임교원 계약학과 강사료를 4주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. 단, 잔여주수가 4주가 아닐 경우 잔여주수만큼 지급할 수 있다.

④ 계약학과 교통비는 개설지역에 따라 4주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. 단, 잔여주수가 4주가 아닐 경우 잔여주수만큼 지급할 수 있다.

⑤ 겸임교원의 강사료는 별도로 책정한다.

⑥ 비행교육원, 항공기술교육원 등에 소속한 교관이 정규교과를 강의하는 경우 전임교원의 초과강사료로 적용한다.

제9조(강사료 정액) 경운대학교의 시간당 강사료 지급 정액은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. 단, 사업단에서 특별히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과목은 사업단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특강료) 외국인교수, 명예교수, 석좌교수, 초빙교수(국내·외), 특정분야에 탁월한 업적인정자(세계적 수준) 등 특별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.

제11조(강사료 지급 기준일) 강사료 지급일은 매월 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일 지급한다. 단, 강사료 특성에 따라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03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